

2014년도 자체 특별감사 결과보고

요 약

□ 감사개요

- 실시감사기간 : 2014. 5. 19.(월) ~ 5. 30.(금) ▶ 10일간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3. 1. 1. 이후 추진 집행사무 전반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45건(시정 81, 주의 54, 개선10)
 - 분 처 분 : 71건(시정 49, 주의 22)
 - 현지처리 : 74건(시정 32, 주의 32, 개선 10)
- 재정상 조치 : 1건 967천원(환수)
- 신분상 조치 : 61명(훈계 7, 주의 54), 표창 3명

※ 직전 자체 종합 감사결과(2011. 5. 2 ~ 6. 30.시행)

- 행정상 조치 : 120건(시정 42, 주의 58)
- 재정상 조치 : 7건 5,838천원 (환수)
- 신분상 조치 : 55명(훈계 9, 주의 46), 표창 5명

목 차

I. 감사개요 및 결과	1
II. 종합평가	2
III. 주요 지적사례	3
IV.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11
V. 조치계획	22

2014년도 자체 특별감사 결과보고

I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 실시감사기간 : 2014. 5. 19.(월) ~ 5. 30.(금) ▶ 10일간
 - 자료수집기간 : 5. 07.(수) ~ 5. 16.(금) ▶ 8일간
- 수감부서 : 전부서(시민공원 및 교량운영, 문화사업 외 22개부서)
 ※ 제외사유 : 시민공원(신규), 교량운영(2012년 청렴평가 최우수), 문화사업(2013년 청렴평가 최우수)
- 감사반 :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3. 01. 01. 이후 추진한 집행사무 전반
 ※ 이전 자체 정기 종합감사 실시 : 2011. 5. 2. ~ 6. 30.

□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

구분	행정상				재정상(건수/천원)			신분상			
	소계	주의	시정	개선권고	소계	회수	환부	소계	징계	훈계	주의
합계	145	54	81	10	1/967	1/967	-	61	0	7	54
분처분	71	22	49	-	-	-	-	61	-	7	54
현지처분	74	32	32	10	1/967	1/967	-	-	-	-	-

※ 수범사례 22건 중 3건 표창(3명)

- 우리공단은 1992. 2. 주차장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주차관리공단으로 출범하여 1998. 1.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공원·유원지, 주요 도로, 영락공원, 광안대로, 시민회관, 자갈치시장 등을 관리하였고, 2008. 3. 이후 한마음스포츠센터, 추모공원, 남항대교, 남포·광복지하도상가, 터널 7개소, 2014년 시민공원 등을 신규 수탁·관리하는 등 업무영역을 다양화 하면서 시민 편의 제공 및 복리를 위하여 부산시의 주요 공공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 메이커”이라는 비전과 “B(최고 지향), I(혁신 추구), S(안전 우선), C(고객 만족), O(성과 창출)”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번 자체 특별감사는 「기본이 바로 선 공단 만들기」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업무처리가 규정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일부 직원들의 예산집행 부적정, 공사감독 소홀, 물품관리 부적정 등 전례답습적이고 자신은 감사와 관련 없다고 인식하는 소극적인 업무자세와 기본적인 업무처리 절차 미이행으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추진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하고 창의적·효율적인 업무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대부분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와 예방 위주의 시설물 점검 및 신속한 응급복구 시스템 운영, 시민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에 주력하여 시민 중심 공단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임.

III 주요 지적사례

1. 경영지원실 분야

□ 공단 사보 제작용역 업무처리 부적정

○ 공단 사보 제작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용역업체가 인력 현황 및 시설 현황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즉 인력은 편집 디자이너 5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상 고용보험 증명서, 맥캔토시 5대 이상, 칼라 출력기 2대 이상 구비내역 및 사보제작팀 명단 및 포토폴리오 제출(상급 이상 실력 보유) 아트디렉터, 편집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포토그래머 각 1인이 포함된 명단 등 또한 사보 배송에 관련하여 배송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 ▶ 경영기획파트에서는 사보 제작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력 및 시설현황 제출' 및 과업추진 세부내용', 우편물 배달 내용 등을 제출 받지 않고, 확인 하지 않는 등 용역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소홀

○ 부산시설공단 맞춤형 복지제도(2009. 1. 30. 제정) 제9조(복지점수의 정산 등) 제2항의 3 정직·직위해제자는 처분기간만 정산하여 환수하되,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처분기간에 포함하여 정산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년·명예 퇴직자, 사망에 따른 당연퇴직자의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복지점수 지급기간 중에 그 사유가 발생하여도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에 대하여는 따로 정산하여 환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 총무인사파트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하면서 지침에 따라 정산 처리 하여야 하나 정산처리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소홀히 하였음.

□ 수의계약 체결 내역 미공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등”을 포함한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재무회계파트에서는 2014월 4월까지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 17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음.

2. 공원·유원지사업단 분야

□ 안전 보건 교육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월 2시간 이상,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교육내용(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총무 인사파트에서 시달한 「2014년 안전보건경영(KOSHA18001) 추진계획, 총무 인사파트-1216(2014.02.13.)」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 중앙공원사업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 안전보건경영(KOSHA18001)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기간제 근로자 포함)들에 대해 매월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비번 등의 사유로 일부 누락하여 실시하지 않았음.

□ 시설물 등 안전관리업무 소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해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무인사파트에서 시달한 「2014년 안전관리 종합계획, 총무인사파트-2284(2014.03.17.)」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 수립, 재난재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 유형별 실지훈련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요인이 사전해소 되도록 하여야 하나,
 - ▶ 금강공원사업소에서는 2014년도 공원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재난재해 유형(태풍·강풍, 지진·지진해일·해일, 붕괴·폭발, 정전, 공연·행사장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실지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삭도시설에 대한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및 실지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3. 영락공원사업단 분야

□ 물품관리 업무지침 이행 소홀

- 물품관리규정 제6조(물품관리종사자의 주의의무)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물품을 보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함에도,
 - ▶ 영락공원사업단에서는 상기 시달된 업무지침 등에 따라 비품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에도 전기, 기계, 통신 등 자재관리를 소홀히 함.

□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감독 소홀

-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감독자는 해당 용역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해당용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는 필요한 제출서류(관련법에 따른 등록증 사본, 용역수행자 명단 및 유자격자 증명서류, 비상연락망 및 조직도 등)를 기재하여 제출받아야 함에도,
- ▶ 추모공원사업소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해당 용역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작성 후 그 내용에 따른 ‘관련법에 따른 등록증 사본, 용역수행자 명단 및 유자격자 증명서류, 비상연락망 및 조직도 등’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특히 『긴급보수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및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가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함.

4. 시민회관 분야

□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유지 및 실적관리 소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 문화행정파트에서는 시민회관(2종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2012년 9월 이후 보수보강 실적(6건)을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지 않는 등 실적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4. 도로관리사업단 분야

□ ◇◇, ◇◇·◇◇터널 하자점검, 관리관련 업무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공사 목적물의 하자검사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 ▶ 터널관리파트에서는 ◇◇, ◇◇·◇◇터널을 인수하여 문제시 되는 점을 수시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정기적인 분야별(소방, 전기, 통신, 기계 등) 하자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 건설기계장비(굴삭기) 차량점검 관리소홀 및 운영방법 개선

- 차량관리 시행내규 제24조(예방정비 시기)에 따르면 차량의 유지관리는 일일, 주간, 월간점검으로 실시하고 주간점검은 운전원과 차량담당직원이 차고지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월간점검은 운전원, 차량담당직원, 차량관리 부서장이 차고지에서 점검한다고 규정에 있음에도,
 - ▶ 도로시설파트에서는 굴삭기(부산 ○○-○○○○)에 대하여 구입이후 향후 발생될 고장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주간, 월간점검을 미실시 하여 해당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또한 소파보수 외 굴삭기 활용도가 떨어져 일부부서 협조공문으로 대체하여 차량관리시행내규 제18조에 의해 배차승인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배차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향후 전부서에 정보공유를 통한 굴삭기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실정임.

5. 광안대로사업단 분야

□ 설계용역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누락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3, 4항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사업 대가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 ▶ 교량기전파트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손해배상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설계부실에 대한 손해를 대비를 소홀히 하였음.

□ 공사 발생품 처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332호, 2010.10.26.) '제3절 공사원가계산 4-3-4 재료비 5. 재료비의 공제'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단 물품관리규정 제34조(불용결정기준)에 의하여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이 결정되었을 경우 제35조(불용결정의 절차)에 따라 매각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 교량시설파트에서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에 대해서는 설계 예산서에 물품의 가치에 따른 재료비의 감액조치가 없었으며 공사 준공 후에도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불용물품대장 등록 및 매각처리를 절차 없이 임의로 처리함.

6. 시설관리사업단 분야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소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직무범위)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사업소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13조 제조시설의 점검, 수리·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과 수리·보수 및 철거 후 이상유무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고 제22조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에 의거하여 비상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 ▶ 자갈치시장사업소·지하도상가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는 제조시설의 수리·보수에 대한 기록관리를 하지 않았고 긴급사태에 대비한 비상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소액 수익구매 자재단가 검토 소홀

- 재무회계팀 9771호(2012.07.09.), 13095호(2013.10.15) 『계약 및 공사관리 제도개선』 사항에 소액수익계약 관리 강화를 위하여 1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2인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음에도,
 - ▶ 한마음스포츠센터에서는 “◇◇◇◇◇ 물품 구매” 등 2건에 대하여 1인 견적으로 구매하여 자재단가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공사분야 공통사항

□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감독자 업무소홀

-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건설교통부예규)」 및 「부산광역시건설공사설계지침서」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성실히 하여야 하고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은 관련 규정과 현장여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구조적 및 경제적으로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을 하여야 하고, 또한 공사 감독자는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 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공사작업일지를 도급자로부터 감독자에게 매일 제출토록 하여 확인한 후 그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여야 함에도,
 - ▶ 공사 감독은 관련법규 및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공사설계 중 노무비 적용 오류, 감독일지 미작성, 설계변경 사항 미승인 후 준공처리, 공사 중 발생한 고철 및 발생품 미정산, 근거 부족한 설계변경,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IV 수범사례 및 개선사항

【수범사례 3건】

제목 : 공단 안전보건활동 강화에 따른 안전문화대상 수상

□ 추진 배경

- 전 사업소 대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 공단 경영방침인 안전경영에 대한 적극적 실행 및 대외 홍보 필요

□ 현 실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일부 사업소 구축, 그 외 사업소 구축 준비 중
- 추진 중인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대외 홍보기능 저조

□ 추진 내용

- 전사업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 : '13.12월
- 외부기관 안전보건활동 전파 ☞ 서울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등
- 위험성평가 도입 운영 : '13.09.10.(매뉴얼 배포, 담당자 교육 실시)
- 전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발생요인 점검 : '13년 2회 실시, '14년 점검 중

□ 개선 효과

- 산업재해발생률 감소 ☞ '12년 : 0.13, '13년 : 0
- 안전문화 활동 강화에 따른 제12회 부산광역시 안전문화대상 선정
※ '14.06.24. 부산광역시시장상 수상 예정

□ 수범자 : 총무인사파트 기계5급 ○○○

제목 : 태종대유원지 노후 급수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

□ 추진 배경

- 양수장 급수 펌프의 노후로 잦은 단수사고 등 상수도 공급의 불안정 유발
- 양수장과 고가수조간 장거리(약 4.3km)를 매일 수차례 직원이 육안 점검 후 양수펌프를 가동하여 단수, 넘침 사고 발생 및 직원의 관리업무 부담 가중

□ 현 실태

- 급수방식이 고가수조로의 양수관과 사용처 급수관을 겸하여 1개 관로 사용



- 양수장 펌프 등 급수시설의 내구연한 경과 및 심각한 노후(84년 설치)로 잦은 고장발생, 화장실 등 공원 내 고객편의시설 단수 등 이용객 불편 지속

□ 추진 내용

- 2014년 市 투자사업비 예산 확보 및 설계
- 양수장~고가수조 자동수위검출 무선 송수신 시스템 설치
- 노후한 양수장 펌프를 고효율 펌프로 교체 및 무인운전시스템(자동화) 구축



□ 개선 효과

- 「명승 17호」 태종대유원지내의 화장실, 음수대 등 상수도 급수 공급의 안정성 유지
- 무인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직원의 관리업무 부담 해소 및 효율적 관리 기여

□ 수범자 : 공원기획파트 건축5급 ○○○

제목 : 항만배후도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 시스템 개선

□ 추진 배경

- 항만배후도로 통합관리를 위하여 남항대교 시스템 개선 필요
- 재난·재해예방 등 상황관리의 일원화로 남항대교 무인화 운영

□ 현 실태

- 남항대교의 각종 제어시스템이 교량에 설치되어 운영
 - ▷ 건설당시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사무실이 없어 교량에 제어시스템 (경관조명, 도로조명, 항로표지) 설치
- 관광객 불거리제공, 야간운전자 편의제공,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황 등 모니터링의 어려움 발생

□ 추진 내용

- 1단계(2010년 ~ 2011년) : 남항대교 초고속 광통신망 1.7Km구축, 교량에 설치된 각종 제어시스템을 고객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2단계(2013년) : 남항대교 무인화 운영, 광안대교에서도 원격제어 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S/W 등 설치, 6개시스템 무인원격관리
- 3단계(2013년 12월) : 항만배후도로 통합관리 대비 광안대교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3.3kM, 2부 변전실 ↔ 용호동)

□ 개선 효과

-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남항대교 무인화 운영에 기여(근무자 4명 → 무인)
 - ▷ 경영개선액 : 160,000천원(40,000천원 × 4인)
- 남항대교 정보통신 방재설비(CCTV, 방송) 市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하여 안전개선
 - ▷ 경영개선액 : 105,000천원(CCTV 9대·비상방송 4개소,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
- 초고속 광통신망을 구축하여 향후 해상교량 통합관리 효율성 제고
 - ▷ 경영개선액 : 51,000천원(광케이블 3.3Km 시설비 절감)
- 재난·재해예방 등 상황관리 일원화에 기여(광안·남항 → 광안)

□ 수범자 : 주차관리사업소 통신 5급 ○○○

V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감사에 지적된 총 145건에 대하여는

- 본처분 71건 중, 시정이 가능한 건은 지체 없이 조치토록 하고, 시정 불가능한 건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교육 등 엄중 주의 촉구

- 내용이 경미한 74건은 공단 감사규정시행내규 제18조에 의거 현지조치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 수범사례 22건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노고 격려 및 우수사례 3건에 대한 수범직원 3명은 표창 조치
-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 10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별 대책강구 등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

□ 재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1건 967천원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

□ 신분상 조치

- 문책대상자 61명(훈계 7, 주의 54)은 공단 감사규정에 의거 신분상 처분기준에 따라 문책 조치
- 수범직원 3명에 대하여는 총무인사파트에서 공적심사 후 이사장 표창 추천하고, 만약 표창 추천이 어려울 경우 자체적인 격려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